

[붙임 5]

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

(당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(破産)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10.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,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
11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3.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
14.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5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6.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
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.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

블라인드 채용 관련 안내사항

☐ 개인 신상정보

-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, 학교명, 학점, 주소,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
-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,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
-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명, 생년월일, 출신지, 가족관계, 출신학교 등 기재 불가
- 장애인·취업지원대상자 등 우대가점 관련항목은 해당여부만 체크

<신상정보 처리예시>

- ◆ 연세대학교 → ○○대학교 / 양정고등학교 → ○○고등학교
- 1) 이메일, 동아리명 등으로 출신학교가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
- 2) 지도교수 등 교수명 기재 불가(학교 추측가능), 프로젝트명 기재 가능
- ◆ 면접 시 성명, 수험번호 언급 불가(별도로 주어진 면접번호로 지칭)

☐ 경력 및 경험 사항

- 자사·타사 경력·경험 : 기관명 포함 산업분야, 부서, 직무 등 기재가능
단, 학교명 및 **사업소(지역)명은 기재 불가**(LG전자 오산공장 → LG전자 ○○공장)

<경력·경험 처리예시>

- ◆ 한전MCS나주지점 → 한전MCS ○○지점 / **사업소 지역명 기재 불가**
- ◆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강남지사 총무팀 인턴 → 한국전력공사 ○○지사 총무팀 인턴
- ◆ ○○○○공사 → 한국전력공사 / 회사명만 기재가능(본인선택)
- ◆ 한국대학교 ◇◇프로그램 이수 → ○○대학교 ◇◇프로그램 이수(학교명 금지)

☐ 기타사항

- 블라인드 채용 안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당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(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면접전형 구술 등)
-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, 생년월일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평가위원회에게 제공하지 않음